

## 임실군의회 입법예고 공고 2025-15호

임실군의회 김왕중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임실군 체육인 복지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임실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5년 4월 15일

임실군의회 의장인



### 1. 제정이유

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「체육인 복지법」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임실군의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- 나. 군수의 책무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~ 제4조)
- 다. 체육인 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- 라. 장학사업 및 원로 체육인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7조)
- 마. 지원금 지급 및 중지·환수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~ 제9조)
- 바. 교육 및 홍보,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(안 제10조 ~ 제12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·법인 또는 기관·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제출기한: 2025년 4월 20일까지

나. 제출방법: 서면·우편·전자우편·직접방문

- 1) 주 소: (55927)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, 임실군의회(의회사무과)
- 2) 전 화: 063-640-2883, 팩스 063-640-2699
- 3) 전자우편: [charity81@korea.kr](mailto:charity81@korea.kr)

### 4. 제정안: 붙임

## 임실군 체육인 복지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체육인 복지법」에 따라 임실군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 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체육인”이란 임실군에 주소를 둔 「체육인 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2. “학생선수”란 임실군에 주소를 둔 「학교체육 진흥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3. “원로 체육인”이란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, 임실군의 체육진흥에 현저한 공적(功績)이 있는 60세 이상의 체육인을 말한다.

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① 임실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과 학생 선수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4조(실태조사) ① 군수는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「체육인 복지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을 경우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, 다음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체육인 복지 사업) 군수는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체육인 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
2. 체육인 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·연구 사업
3. 체육인 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
4. 체육인 복지 관련 행사 및 국·내외 교류 사업
5. 그 밖에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6조(장학사업) ① 군수는 학생선수가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,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「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」 제14조에 따른다.

제7조(원로 체육인의 지원) ① 군수는 원로 체육인이 은퇴 후 지병, 생계 곤란 등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와 생계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필요성에 관한 세부 기준, 대상자별 지급 금액·방법·시기, 그 밖에 원로 체육인 지원에 필요한 사

항은 문화체육관광부의 「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른다.

제8조(지원금) ① 군수는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, 출전비,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,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9조(지원금의 지급 중지와 환수)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법 제22조 내지 제23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중지와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2조 내지 제23조에 따른다.

제10조(교육 및 홍보) 군수는 임실군 누리집 등을 활용하여 체육인 복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.

제11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임실군 체육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임실교육지원청과 체육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임실 체육인 복지 조례안  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4. 작성자

- 임실군의회 김왕중 의원

### □ 『체육인 복지법』

**제4조(체육인의 지위와 권리)** ① 체육인은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.

② 모든 체육인은 자유롭게 체육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, 체육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,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.

③ 모든 체육인은 유형·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.

**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인이 국민체육진흥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공헌할 수 있도록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